

2. 住宅共給에 關한 規則中 改正令

建設交通部令 第70號 1996. 6. 29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우리나라에 영주귀국하는 동포와 정부제3청사의 신축에 따라 대전광역시 둔산지역에 이주하게 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하고,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993년도에 개최되는 국제무역산업 박람회의 참가자 및 운영요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대덕연구단지에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를 위하여 대덕 연구단지안에 건설하는 주택 및 정부 제3청사의 신축에 따라 당해 청사에 이전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둔산지역 안에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주택

4. 외국정부와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영주귀국하는 동포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제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4호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세입자”를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 한다.

다. 도시계획사업(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회보